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5
년
1
월
22
일
(수)
·
주
간
제
4
·
6
화
·
들
린
제
1
7
1
1
·
1
7
1
2
화
·
개
정
조
세
법
률
신
구
조
문
대
비
표
구
분
비
·
0
2
-
8
2
9
-
7
5
5
7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저널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1/ 22 통권 1711·171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5년 시행 개정 조세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목 차

▶ 2025년 개정세법 내용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 항목 엄선	p.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p.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p.1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p.60

※설 명절 연휴로 인하여 1711호·1712호가 통합 발행되었습니다.
을사새해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p. 64

AnSe, Creates the Best Answer

eAnSe.com

 의 30분 내 Q&A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2025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 R&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
-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 도입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연 4,400만원으로 인상
-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연장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한도 상향하고 공제기준 완화
-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22)
 -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
<p>● 제5조[신탁소득]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p> <p>1. ~ 4. (생략)</p> <p>③·④ (생략)</p> <p>●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생략)</p> <p>1. ~ 4. (생략)</p> <p>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p> <p>6. (생략)</p> <p>●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p> <p>② (생략)</p> <p>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 라. (생략)</p>	<p>● 제5조[신탁소득]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p> <p>6. (현행과 같음)</p> <p>●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특례기부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 라.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 13) (생략) <u><신설></u></p> <p>바. (생략) 2. (생략) ③ ~ ⑥ (생략)</p> <p>●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생략)</p> <p>●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4. (생략) ③·④ (생략)</p> <p>●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p>	<p>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 13) (현행과 같음) 14) 1)부터 13)까지의 병원이 설립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p> <p>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p>

현행	개정
<p>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p>●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⑥ 제4항 본문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p>●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																		
<p>② (생략)</p> <p>●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생략) <신설></p> <p>2.·3. (생략)</p> <p>② ~ ⑨ (생략)</p> <p>●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단서 신설></p> <p>1.·2.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p> <p>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p>	<p>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100분의 9</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1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td> </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 <td>37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td> </tr> <tr> <td>3천억원 초과</td> <td>625억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 </tr> </tbody> </table> <p>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100분의 19</td> </tr> <tr> <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 <td>38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td> </tr> <tr> <td>3천억원 초과</td> <td>626억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td> </tr> </tbody>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p>●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p> <p>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p>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현행	개정
<p>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 다. (생략) <u><신설></u></p> <p>③ ~ ⑤ (생략)</p> <p>●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 2.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p>	<p>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당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법인의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우</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p> <p>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p>

현행	개정
<p>③ ~ ⑤ (생략)</p> <p>●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2호의2 또는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의</p>	<p>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2. 국내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 또는 법인의</p>

현행	개정
<p>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 라. (생략)</p> <p>마. (생략)</p> <p>3. ~ 10. (생략)</p> <p>●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나.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마. (현행과 같음)</p> <p>3. ~ 10. (현행과 같음)</p> <p>●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제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⑤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93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p>

현행	개정
<p>●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⑦ (생략)</p> <p>●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 ③ (생략) <신설></p> <p>●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p> <p>●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2. (생략) <신설></p>	<p>자가 제98조제1항"으로 본다.</p> <p>●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2. (생략)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p>

현	행	개	정
		대한 명령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98조의4제1항 전단,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p> <p>2.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p> <p>제2조【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중간예납세액 및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8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93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9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0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의4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2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제1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현행	개정
<p>●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p> <p>12. (생략)</p>	<p>●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p>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p> <p>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②·③ (생략)</p> <p>●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p> <p>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p> <p>2. (생략)</p> <p>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p> <p>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p> <p>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p> <p>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p> <p>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p> <p>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75</p> <p>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p> <p>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25</p> <p>2. (현행과 같음)</p> <p>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 ~ 7. (생략)</p> <p>8. (생략)</p> <p>가.·나. (생략)</p> <p>다. <u>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증개업</u></p> <p>9. ~ 18. (생략)</p> <p>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p> <p>⑤ (생략)</p> <p>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u>2024년 12월 31일</u>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u>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0</u></p> <p>2. <u>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u></p> <p>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u>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 ~ 7. (현행과 같음)</p> <p>8. (현행과 같음)</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u></p> <p>9. ~ 18. (현행과 같음)</p> <p>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u>2027년 12월 31일까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u>2027년 12월 31일</u>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u>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u></p> <p>가. <u>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분의 100</u></p> <p>나. <u>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분의 50</u></p> <p>2. <u>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u></p> <p>가. <u>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분의 100</u></p> <p>나. <u>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 100분의 75</u></p> <p>다. <u>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분의 50</u></p> <p>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u>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현행	개정
<p>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p> <p>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p> <p>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p>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50}{\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00}$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text{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p>⑧ ~ ⑫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생략)</p> <p>1. 감면 업종</p> <p>가. ~ 하. (생략)</p> <p>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증개업은 제외한다)</p> <p>너. ~ 호. (생략)</p> <p>2.·3.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p> <p>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p> <p>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p> <p>1) (생략)</p> <p>2)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p>	<p>⑧ ~ ⑫ (생략)</p> <p>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p> <p>●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감면 업종</p> <p>가. ~ 하. (현행과 같음)</p> <p>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증개업은 제외한다)</p> <p>너. ~ 호.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p> <p>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p> <p>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20(중소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p>

현행	개정
<p><u>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u></p> <p>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u>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u> 한도로 한다.</p> <p>2. (생략)</p> <p>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p> <p>1) (생략)</p> <p>2)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30</p> <p>나. (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p> <p>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u>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u>)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1) (생략)</p> <p>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u>100분의 15</u></p> <p>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u>100분의 10</u></p> <p>3)·4) (생략)</p> <p>② ~ ⑥ (생략)</p>	<p>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u>100분의 25)</u></p> <p>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u>100분의 10</u>을 한도로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p> <p>1)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30(<u>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u></p> <p>나. (현행과 같음)</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p> <p>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u> 상당하는 금액</p> <p>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1) (현행과 같음)</p> <p>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구분에 따른 비율</p> <p>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u>100분의 20</u></p> <p>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u>100분의 15</u></p> <p>3)·4)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p> <p>●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 5. (생략) ② (생략) 1. 2. (생략) 3. (생략) 가. 나. (생략)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략)</p> <p>●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생략) 1. 2. (생략)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현행	개정
<p>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가. ~ 마. (생략)</p>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생략)</p> <p>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7. (생략)</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5. (생략)</p> <p>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u>창투조합등</u>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④·⑤ (생략)</p> <p>●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생략)</p> <p>1. (생략)</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23에 따른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u>창투조합등</u>(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 ~ ⑥ (생략)</p> <p>●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① (생략)</p>	<p>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u>벤처투자조합등</u>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현행과 같음)</p> <p>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u>벤처투자조합등</u>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7.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u>벤처투자조합등</u>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u>벤처투자조합등</u>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조의23에 따른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u>벤처투자조합등</u>(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 (생략)</p> <p>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u>창투조합</u>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u>창투조합</u>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u>창투조합</u>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생략)</p> <p>③·④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u>벤처투자조합</u>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u>벤처투자조합</u>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u>벤처투자조합</u>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14조【<u>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u>】</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u>소득세법</u>」 제87조의 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6. (생략)</p> <p>7. 「<u>증권거래세법</u>」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u>)</p> <p>8.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u>소득세법</u>」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의 소득에 대해서는 「<u>소득세법</u>」과 「<u>법인세법</u>」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u>소득세법</u>」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p>	<p>● 제14조【<u>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u>】</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u>소득세법</u>」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증권거래세법</u>」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u>소득세법</u>」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u>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u>)</p> <p>8.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u>소득세법</u>」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u>소득세법</u>」과 「<u>법인세법</u>」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u>소득세법</u>」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p>

현행	개정
<p>(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u>밴 금액</u>을 <u>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u>으로 한다.</p> <p>⑦·⑧ (생략)</p> <p>●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u>비과세 특례</u>】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③ (생략)</p> <p>●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u>납부특례</u>】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u>과세특례</u>】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p> <p>1.·2. (생략)</p> <p>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표 생략)</p>	<p>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u>밴 금액</u>을 <u>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u>으로 한다.</p> <p>⑦·⑧ (생략)</p> <p>●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u>비과세 특례</u>】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u>납부특례</u>】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u>과세특례</u>】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 ……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u>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u></p> <p>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양도소득금액 = A-B-(C-D)</p> <p>A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p> <p>B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p> </div>

현행	개정
<p>④ ~ ⑥ (생략)</p> <p>⑦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⑧ ~ ⑩ (생략)</p> <p>●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생략)</p> <p>●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의 시가 중 큰 금액 C :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D :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p> </div>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⑧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상</p>

현행	개정
<p>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2. (생략) ③·④ (생략)</p> <p>●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p> <p>1. (생략)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p>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p> <p>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p>	<p>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024.12.31. 개정)</p> <p>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p> <p>가) 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 100분의 3</p> <p>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p> <p>가) 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25</p>

현행	개정
<p>나.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u>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u>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p> <p>3. (생략) ② ~ ⑤ (생략)</p> <p>●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 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 ② (생략)</p>	<p>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 100분의 20</p> <p>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 100분의 15</p> <p>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 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 1000분의 75</p> <p>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 100분의 5</p> <p>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 100분의 1</p> <p>나.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u>100분의 10</u>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p> <p>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③ (생략) ④ (생략)</p> <p>●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 3. (생략) ② (생략) ③ (생략)</p> <p>●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2. (생략) ②·③ (생략)</p>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제> ③ (생략)</p> <p>●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생략)</p> <p>●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p>

현행	개정
<p>1. ~ 3. (생략) ② ~ ⑧ (생략)</p> <p>●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⑨ (생략)</p> <p>●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p> <p>1. ~ 3. (생략)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단서 신설></p> <p>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⑨ (현행과 같음)</p> <p>●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p> <p>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p> <p>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p>	<p>●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p> <p>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p> <p>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6조제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p>



현행	개정
<p>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p> <p>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p> <p>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p> <p>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p> <p>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p> <p>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p> <p>1.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p> <p>2. 거주자 :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p> <p>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p>	<p>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p> <p>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각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p> <p>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p> <p>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법인</p> <p>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p> <p>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p> <p>③ 제항및제항에따라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 과세를이연받거나분할납부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p> <p>1.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p> <p>2. 거주자 :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p> <p>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p>

현행	개정
<p>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2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p>	<p>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p>
<p>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p>	<p>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 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p>	<p>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p>
<p>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p>	<p>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p>

현행	개정
<p>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p> <p>⑦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 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p> <p>●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p> <p>2. (생략)</p> <p>④ ~ ⑧ (생략)</p> <p>●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p> <p>2.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현행	개정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u>금융투자소득세</u>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1.2. (생략)</p> <p>④ ~ ⑥ (생략)</p> <p>●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u>금융투자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u>금융투자소득세</u>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u>금융투자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u>금융투자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u>금융투자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대통령령으로</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u>양도소득세</u>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u>양도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u>양도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u>양도소득세</u>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u>양도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u>양도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u>양도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u>양도소득세</u>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대통령령으로</p>



현행	개정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 재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신설>	
<p>●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p>	<p>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p>
<p>●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생략)</p> <p>1. (생략)</p> <p>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p>	<p>●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p>

현행	개정
<p>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③ (생략)</p> <p>●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서 생략)</p> <p>1. 세액감면 요건</p>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단서 신설></p> <p>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p> <p>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p> <p>2) (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p> <p>③ ~ ⑥ (생략)</p> <p>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p>	<p>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단서 삭제></p> <p>1. 세액감면 요건</p>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p> <p>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p> <p>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p> <p>2)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p>

현행	개정
<p>.....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p> <p>⑧·⑨ (생략)</p> <p>●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생략)</p> <p>1. 세액감면 요건</p>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단서 신설></p> <p>나.·다. (생략)</p> <p>2.·3.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p> <p>⑥·⑦ (생략)</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p> <p>가. ~ 마. (생략)</p> <p>바. 어업권 :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p> <p>사.·아. (생략)</p> <p>2.·3. (생략)</p> <p>② ~ ⑨ (생략)</p>	<p>.....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p> <p>⑧·⑨ (현행과 같음)</p> <p>●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세액감면 요건</p> <p>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p> <p>나.·다.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어업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p> <p>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p> <p>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p> <p>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p> <p>사.·아.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신 설>			
<p>●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p>		<p>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생 략) 1.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 다. (생 략)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 사. (생 략) <신 설></p>		<p>●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생 략)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③ ~ ⑤ (생략)</p> <p>●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p> <p>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p> <p>3. (생략)</p> <p>② ~ ⑧ (생략)</p> <p>●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략)</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③ (생략)</p> <p>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p> <p>가. 나. (생략)</p> <p>2. (생략)</p> <p>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600만원</p> <p>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400만원</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p>

현행	개정
<p>한다.</p> <p>⑥ ~ ⑨ (생략)</p> <p>⑩ (생략)</p> <p>1. (생략)</p> <p>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3. (생략)</p> <p>⑪ (생략)</p> <p>●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p>	<p>준으로 판단한다.</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⑩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⑪ (현행과 같음)</p> <p>●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p>

현행	개정
<p>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7.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 ⑬ (생략)</p> <p>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p> <p>1. ~ 3. (생략)</p> <p>●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 ⑧ (생략)</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생략)</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니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① ~ ⑬ (현행과 같음)</p> <p>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⑤ (생략)</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p> <p>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3.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p>

현행	개정
<p>●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 <p>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p> <p>●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해지하</p>	<p>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p> <p>●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 <p>●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해지하는 경우에는</p>

현행	개정
<p>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④ (생략)</p> <p>⑤ ~ ⑧ (생략)</p> <p>●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p>1.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p> <p>가. (생략)</p> <p>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p> <p>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p> <p>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p> <p>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p>	<p>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② (중전 제3항과 같음)</p> <p>●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p> <p>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p> <p>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p> <p>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파생결합증권</u></p> <p style="text-align: center;"><u>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u> <u>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u></p> <p>4. 5. (생략)</p> <p>④ (생략)</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⑥ (생략)</p> <p>⑦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1. 이자·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p> <p>2. 금융투자소득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p> <p>⑩ (생략)</p>	<p>4.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p> <p>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⑪ 제10항에 따라 신탁업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⑫ (생략)</p> <p>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2. (생략) ② ~ ⑬ (생략)</p> <p>●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② (생략)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략)</p> <p>●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 (생략)</p>	<p>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⑪ (생략)</p> <p>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⑬ (현행과 같음)</p> <p>●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p>	

현행	개정
<p>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p>	<p>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략)</p>	<p>●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략)</p>	<p>●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신설></p>	
<p>●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p>	<p>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p> <p>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현행	개정
<p>요건을 갖출 것</p> <p>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p> <p>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p>	<p>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99조의4【<u>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u>】 ① (생략)</p>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p> <p>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에 소재할 것</p> <p>1) (생략)</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p> <p>3) ~ 5) (생략)</p> <p>나. (생략)</p> <p>2. (생략)</p> <p>② ~ ⑧ (생략)</p>	<p>● 제99조의4【<u>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u>】 ① (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p> <p>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에 소재할 것</p> <p>1) (현행과 같음)</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u>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u>한다.</p> <p>3) ~ 5)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99조의10【<u>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u>】 ① (생략)</p> <p>1. (생략)</p> <p>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p> <p>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 정하는 요</p>	<p>● 제99조의10【<u>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u>】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p> <p>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 정하는 요</p>

현행	개정																
<p>건을 충족할 것</p> <p>3. ~ 6.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생략)</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⑦ ~ ⑩ (생략)</p>	<p>건을 충족할 것</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 2024년 7월 25일</p> <p>⑦ ~ ⑩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의 한도로 한다.</p> <p>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p>	<p>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p> <p>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p> <p>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구원 구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소득기준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2천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홀벌이 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3천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맞벌이 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3천800만원</td> </tr> </table> <p>3.·4.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생략)</p>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p>●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p> <p>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구원 구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소득기준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2천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홀벌이 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3천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맞벌이 가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4천400만원</td> </tr> </table> <p>3.·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현행	개정																								
<p>1. (생략) 2. 홑벌이 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생략) 나. (생략) 1) (생략)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p> <p>3) (생략) 3. (생략) ⑥·⑦ (생략)</p> <p>●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생략)</p> <p>1.·2. (생략)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목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100분의 330</td> </tr> </tbody> </table>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100분의 330	<p>1. (현행과 같음) 2. 홑벌이 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p> <p>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목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등</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700분의 330</td> </tr> </tbody> </table>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700분의 330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100분의 330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700분의 330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p>																								

현행	개정
<p>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p> <p>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 (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p>	$\frac{A}{B} \times C$ <p>A :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B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C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6</p>
<p>③ ~ ⑤ (생략)</p> <p>●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생략) ⑤ (생략) 1. (생략)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⑥ ~ ⑧ (생략)</p> <p>●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p> <p>② (생략)</p> <p>●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p>	<p>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 (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 ⑦ (생략)</p> <p>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생략)</p>	<p>●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 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 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1. 2. (생략)</p> <p>② ~ ⑦ (생략)</p>	<p>●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 공제】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p>⑤ (생략)</p>	<p>●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⑤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월공제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공제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p>⑥ (생략)</p>
<신설>	
<p>●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p>



현행	개정
<p>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 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p>	<p>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 ④ (생략)</p> <p>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 ~ ⑥ (생략)</p> <p>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단서 신설></p> <p>1. ~ 3. (생략)</p> <p>⑧ (생략)</p>	<p>●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 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⑧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p>	<p>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p>

현행	개정
<p>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p>	<p>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p>	<p>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p>
<p>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p>	<p>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p>	<p>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⑩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p> <p>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②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p> <p>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 ③ (생략)</p> <p>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p> <p>⑤ (생략)</p>	<p>●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따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램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또는 스크램업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램업거래계좌</p>	<p>●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스크램업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램업거래계좌 또는 면세</p>

현행	개정
<p>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p> <p>② 금사업자 또는 스크램플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램플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p> <p>●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p> <p>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생략)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생략)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p> <p>●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p>	<p>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p> <p>② 금사업자, 스크램플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램플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p> <p>●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p> <p>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p> <p>●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p>

현행	개정
<p>등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생략) ④ ~ ⑦ (생략)</p> <p>●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 3. (생략) ④ ~ ⑥ (생략)</p> <p>●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p> <p>●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p>	<p>등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p>

현행	개정
<p>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p> <p>⑥·⑦ (생략)</p> <p>●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② (생략) 1. 2. (생략)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나. (생략) <신설></p> <p>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p> <p>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p> <p>6. (생략) 가. (생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생략)</p>	<p>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전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p> <p>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p> <p>6.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등사용분</u>) × 100분의 40</p> <p>2) (생략)</p> <p>라. (생략)</p> <p>7.·8. (생략)</p> <p>③·④ (생략)</p> <p>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 ⑩ (생략)</p> <p>●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 ⑩ (생략)</p> <p>● 제146조의2【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p> <p>② ~ ⑤ (생략)</p>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문화체육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문화체육사용분</u>) × 100분의 40</p> <p>2)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7.·8.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제4항 각			

현	행	개	정
<p>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6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7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p> <p>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9조【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2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21조【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22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p> <p>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25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7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p>			

현	행	개	정
<p>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p>제2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p>제2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0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p> <p>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p>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현행	개정
<p>●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 4. (생략)</p> <p>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u>혈액</u></p> <p>6. ~ 20. (생략)</p> <p>② (생략)</p> <p>●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u>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u></p> <p>6. ~ 2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p>



현행	개정
<p>●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생략) ② (생략) 1.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p>	<p>●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p> <p>●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6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수시부과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p> <p>② (생략)</p> <p>● 제60조【가산세】 ① (생략) 1. 1의2.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직</p>	<p>●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60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1. 1의2.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직</p>

현행	개정
<p>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u>1퍼센트</u> ② ~ ⑩ (생략)</p> <p>●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생략)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 ⑦ (생략)</p> <p>●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p> <p>●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③ (생략)</p> <p>●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① (생략) <신 설> ③·④ (생략)</p> <p>●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본다. ② ~ ⑤ (생략)</p>	<p>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u>2퍼센트</u> ② ~ ⑩ (현행과 같음)</p> <p>●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③ (생략)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p> <p>●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u>수시부과한 세액</u>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③ (현행과 같음)</p> <p>●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1퍼센트”는 “0.5퍼센트”로, “2퍼센트”는 “1퍼센트”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혈액에 대한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10일 (금)	1월 13일 (월)	1월 14일 (화)	1월 15일 (수)	1월 16일 (목)
미	달	러 (USD)	1458.20	1460.70	1471.30	1463.30	1460.20
일	본	엔 (JPY)	922.42	925.69	934.81	926.43	933.69
영	국	파운드 (GBP)	1794.75	1782.49	1797.86	1786.54	1786.77
캐	나	다 달러 (CAD)	1012.78	1012.93	1023.90	1019.58	1018.55
홍	콩	달러 (HKD)	187.38	187.58	188.96	187.92	187.54
위	안	화 (CNH)	198.33	198.70	200.01	199.14	198.74
유	로	화 (EUR)	1502.02	1495.83	1508.89	1508.08	1502.84
호	주	달러 (AUD)	903.65	897.38	910.00	906.44	909.70
싱	가	폴 달러 (SGD)	1065.78	1065.04	1074.77	1070.45	1068.10
말	레	이시라링기트 (MYR)	323.83	324.85	326.23	324.82	324.56